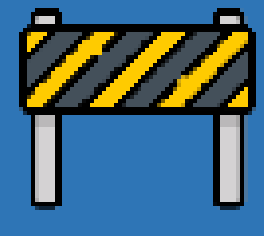




지붕 보수공사 중 채광창이 파손되어 추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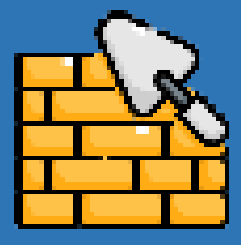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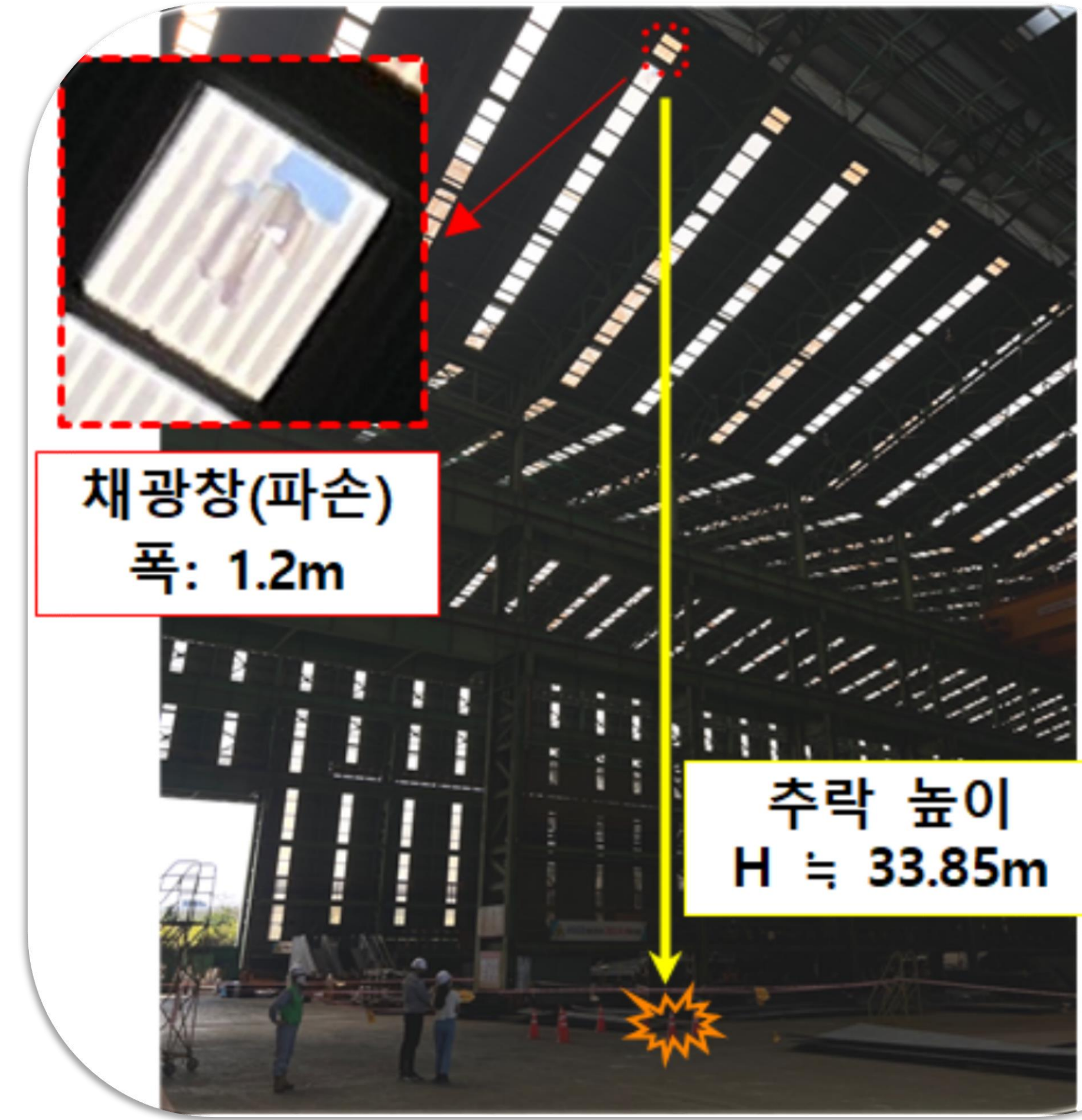


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동종경력
추락	사망 1명	60세	-

2022.8.27.(토) 11:03경 부산 사하구 소재 0000㈜ 조립공장의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이동 중 채광창* 부위를 밟아 해당부위가 파손되며, 공장 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(약 33.8m) 사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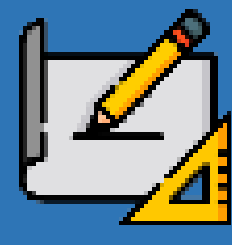
* 채광창(skylight) : 공장 , 창고 등의 지붕에 채광을 목적으로 설치된 창으로 섬유강화플라스틱(FRP), 폴리카보네이트(PC) 등의 재료가 사용됨



작업상황

비정상 작업

- (정상) ① 채광창과 같은 강도가 약한 자재로 덮은 지붕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
② 채광창 부위의 파손에 대비하여 추락방호망,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- (비정상) 추락방호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
① 채광창 부위에 덮개 미설치, ② 추락방호망 미설치, ③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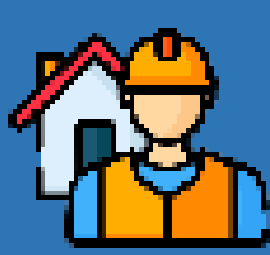
발생원인

1 직접원인

- (추락방호조치) 장기간 태양광, 외기 등에 노출로 인하여 노후, 열화된 채광창 위에서 작업 진행 시 추락방호조치 미실시

2 기여요인

- (교육부재) 지붕 작업 시 부재의 강도, 재질 및 특성에 관한 교육 미실시 및 근로자 주지 미흡
- (관리감독) 재해당시 피해자는 지급된 안전모,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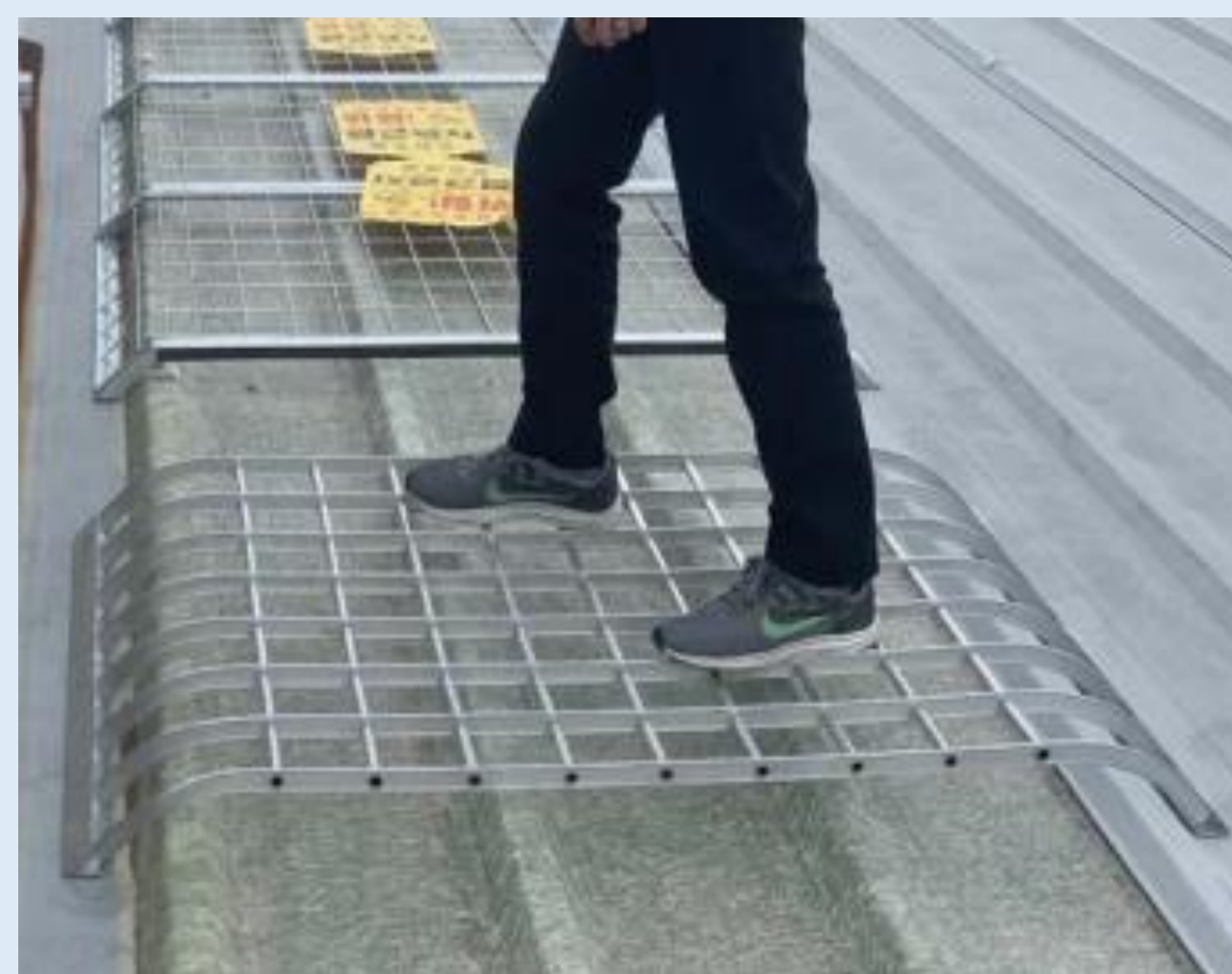
예방대책

1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 실시 철저

-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
-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
-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약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
- 위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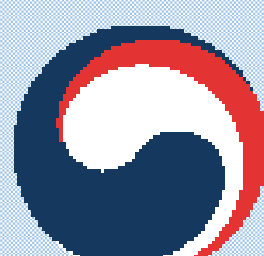
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점검

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
-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전 점검



< 채광창 안전덮개 >

※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